

국토교통부 지원으로 해외건설협회가 운영 중인 『2025년도 해외건설 시장개척 프로젝트 지원사업』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건설업계의 많은 관심과 활용 바랍니다.

1. 사업목적

-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위한 수주활동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건설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해외진출 활성화를 통한 시장 다변화 및 수주확대 실현

2. 지원내용

- 지원항목 : 국외활동비 및 발주처 초청비, 현지조사 및 외주 비용 등 직접경비
- 지원금액 : 수주활동 지원 **최대 1억원**, 기타 지원사업 **최대 3억원**
- 지원비율(정부보조금 비율)
 - 중소기업 : 총 소요비용의 80%
 - 중견기업 : 총 소요비용의 60%
 - 대·공기업 : 총 소요비용의 50%
- ☞ EDCF 연계목적 조사·분석 지원 및 정책지원, 현상공모 및 국가간 경쟁입찰 참여 지원사업은 지원비율을 10%p 추가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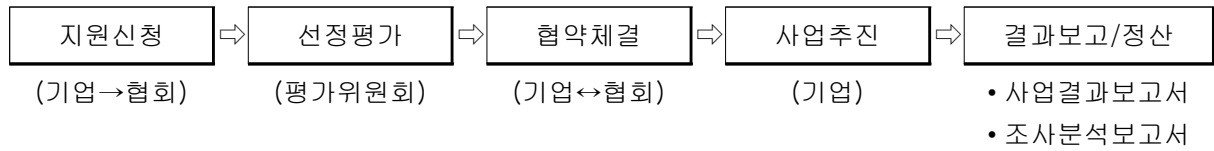
3. 지원사업

- ① (수주활동 지원) 해외공사 수주를 위한 현지조사, 발주기관 면담, 발주처인사 국내 초청 등 수주활동 비용 지원
 - * 해외건설기업과 IT, 스마트팜, 항만 등 타 산업 분야의 기술기업과 공동(패키지)진출하는 수주활동 사업에 대한 지원 포함
- ② (프로젝트 조사·분석 지원) 해외공사의 추진 필요성 또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시장 및 환경분석, 경제성, 기술적용 가능성 등의 조사·분석 비용 지원
- ③ (EDCF연계 목적 조사·분석 지원) 대외경제협력기금 연계 타당성검토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조사·분석 비용 지원
- ④ (현상공모 및 국가간 경쟁입찰 참여 지원) 해외건설 또는 엔지니어링 사업의 현상공모 및 국가간 경쟁입찰(제한경쟁입찰 포함)의 참여 준비 비용 지원
- ⑤ (정책지원) 법령 및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해당분야 공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하는 프로젝트 조사·분석, 진출환경 분석 또는 현지 협력활동 비용 지원

4. 지원기간 : 신청일~최대 10개월

5. 신청기간 : 공고일(25.2.27) 이후 수시 접수(예산소진 시 접수종료)

6. 지원절차



7. 신청자격

- 「해외건설 촉진법」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를 마친 기업(해당 공종에 한함)
- 「해외건설 촉진법」에 따른 해외공사
- 대기업·공기업은 중소기업·중견기업과 공동 신청한 경우
- 제외사업
 - 국내기업 하도급 사업, 타기관 지원사업과 중복 사업

8. 신청서류

- 신청서 및 요약서 1부, 사업계획서 3부,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, 최근 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1부,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, 가점확인서류
 - * 제출서류 유효기간 필수 확인
- 기업규모 확인서 1부(중소·중견기업 해당)
 - * 제출서류 유효기간 필수 확인
- 발주처 인사초청 계획서(계획 보유시 제출)
- 외주 또는 현지조사비 과업지시서 및 견적서(계획 보유시 제출)
 - 외주비 견적서 2건, 현지조사비 견적서 3건(현지업체 2건 및 국내업체 1건)
 - * 제출서류는 한글 워드프로세서(HWP) 및 스캔본(PDF)으로 전자파일 별도 제출(USB 등)
- 발주처의 제안·타당성검토 지원요청 공문 또는 협력 MOU 등(계획 보유시 제출)

9. 신청서 접수 및 문의 :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

- 이메일 : gimp@icak.or.kr
- 전 화 : 02-3406-1141, 1103
- 주 소 :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9길 42 13층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

10. 참고사항

- 신청시 출장일수/횟수 제한(회당 최대 13박 14일 / 최대 3회 / 선정 이후 출장일수 및 횟수 추가신청 가능), 적용환율 명시(직전년도 최종회차 현찰 살 때 기준/ 1USD = 1,502.84원), 가점 신설(스마트 건설 강소기업 등)
-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(www.ocis.go.kr) 홈페이지의 「진출지원-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-시장개척지원-공지/자료」에서 상세내용 확인 및 신청서 양식 등 참고자료 다운로드 가능